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3월 29일 (금) 오후 2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308-1 (주)케이피티유 2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18기(2012.01.01~2012.12.3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박도봉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최건환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단, 1% 이하 소액주주의 경우 주총참석장이 서면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주총참석장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분증 또는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당사에 비치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권리주주임을 확인합니다.)

6. 기타사항

- 경영 내실화에 더욱 정진하고자 주주총회 기념품을 준비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4일

KPTU 주식회사 케이피티유

대표이사 박 석 봉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 2013년 03월 22일(※주주총회 5영업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3년 3월 29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케이피티유의 제18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부의 안건 참고 자료》

제1호 의안 : 제18기(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9조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상법시행령 제9조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 …… …… ……상법시행령 제30조제1항…… …… …… …… …… …… …… …… ② (현행과 동일) ③…… …… …… ……상법시행령 제30조제1항…… …… …… …… …… …… …… … ④ ~ ⑥ (현행과 동일) ⑦…… …… ……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 …… …….	-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서 제외함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	- 자구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항신설
② 감사는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조항변경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 조항변경 및 자구수정
<신 설>	⑤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조항신설
<신 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조항신설<상법 제449조의2>
<신 설>	⑦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항신설<상법 제449조의2>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 조항변경
제44조(이익배당) ①~② (생략) ③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4조(이익배당)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자구수정<상법 제462조 제2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박도봉 사내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신규선임여부	비고
박도봉	1960.11.03	前 (주)케이피티유 대표이사 現 (주)동양강철 회장	이사회	-	-	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최건환 감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신규선임여부	비고
최건환	1967.11.07	-前 알테크 -現 장안금형 대표	이사회	-	-	신규선임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참 석 장

㈜케이피티유 귀중

제18기(2012. 1. 1 ~ 2012. 12. 31) 정기주주총회

일 시 : 2013년 3월 29일(금), 오후 2시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308-1 본사 2층 대회의실

2013 년 월 일

성 명(회사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임 장

㈜케이피티유 귀중

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본인은 ㈜케이피티유의 주주로서 2013년 3월 29일에 개최하는 ㈜케이피티유 제 18기 정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있어 본인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주주총회 참석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3 년 월 일

위 임 인 (주주 본인) 주주 번호 :
소유주식수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